

아래는 공주민제(DCA)를 “헌법 언어”로 번역한 뒤, 현행 대한민국 헌법 조항들과의 접점·충돌, 그리고 \*\*충돌을 해소하는 개헌(조문 초안)\*\*까지 한 번에 둑어 정리한 검토다. (인용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했다. ([법제처](#)))

---

## 1) 공주민제가 헌법에 요구하는 “핵심 기능” 5가지

공주민제는 정책 패키지처럼 보이지만, 헌법적으로는 다음 5개 기능을 요구한다.

### 1. 자본 접근권의 기본권화

“노동소득”이 약해지는 시대에, 시민이 **자본소득·의결권·데이터/플랫폼 수익**에 접근할 권리를 기본권(또는 사회권)으로 둬야 함.

### 2. 귀속 규칙(사전 분배)의 헌법적 근거

복지(사후 이전)만이 아니라,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시민 둘이 자동 귀속되도록 하는 규칙(예: 사회배당, 시민지분신탁, N-DSA)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함.

### 3. 조세-지분 전환(TEC) 같은 재정·조세 수단의 합헌성

납부 방식(금전만이 아닌 지분·수익권 등 “재산적 급부” 포함)과 절차적 통제를 헌법 차원에서 명료화할 필요가 큼. (현행 조세 법률주의는 존재하지만, “지분으로 납부” 같은 형태는 분쟁 포인트가 됨. ([법제처](#)))

### 4. 데이터·디지털 인프라의 ‘자원화’ + 프라이버시 안전장치

데이터/AI 인프라를 “국민경제상 중요한 자원”으로 다루되(현행은 천연자원 중심), 동시에 사생활·개인정보 자기결정에 대한 헌법적 방벽이 필요함. ([법제처](#))

### 5. 분산의결(DDP)·거버넌스의 헌법적 정합성

국민주권 원리(주권은 국민에게) 위에서, 디지털/분산 방식의 참여·통제(감사로그, 항소, 지연 등)를 “원칙” 수준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음. ([법제처](#))

---

## 2) 현행 헌법이 이미 공주민제에 “우호적인 지점”

현행 헌법만으로도 공주민제의 일부는 \*\*“입법으로 구현 가능한 영역”\*\*이 있다.

- **국민주권·민주공화국 원리:**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총강은 “자산·데이터·플랫폼 지배구조를 국민에게 되돌리는” 논리의 최상위 토대가 된다. ([법제처](#))
- **인간의 존엄·행복추구:** ‘경제적 생존 기반’이 붕괴되는 국면에서 제도 설계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. ([법제처](#))
- **경제질서(경제민주화):** 경제의 자유·창의를 존중하면서도, 경제력 남용 방지·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·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“추출 상한, 플랫폼 규칙, 지배력 통제”의 헌법적 발판이다. ([법제처](#))
- **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:** 재산권 보장 + 공공복리 적합 + 공공필요 시 수용/사용/제한 및 보상 구조는 “자본 귀속 규칙”을 설계할 때 기본 프레임이 된다. ([법제처](#))
- **사회보장(인간다운 생활):** 사회권 조항은 “사회배당/자산 기반 안전망”을 사회보장

의 진화 형태로 논리화할 여지가 있다. ([법제처](#))

- **국토·자원 보호 및 이용계획:** 천연자원·국토에 대해 국가가 균형 개발/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제한·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구조는, 디지털 자원으로 확장할 때 참고 모델이 된다. ([법제처](#))

---

### 3) 공주민제 구현 시 “헌법 조항 간 충돌”이 실제로 생기는 지점

여기부터가 핵심이다. 공주민제는 혼행 헌법 조항을 “하나씩” 보면 가능해 보이지만, 조항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할 때 충돌이 생긴다.

#### 충돌 1. 제119조(경제민주화) vs 제126조(사영기업 국유화·경영통제 금지)

- 제119조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·조정을 허용한다. ([법제처](#))
- 그런데 제126조는 “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한 경우” 외에는 사영기업을 국유·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·관리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. ([법제처](#))
- 공주민제의 TEC/C-COT/N-DSA가 “공유 이전” 또는 “경영 통제”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, 제119조의 민주화 논리만으로는 제126조 장벽을 넘기 어렵다.

해소 방향:

- (A) 공주민제의 “지분 귀속”을 \*\*국가 소유가 아닌 ‘국민 전체를 수익자로 하는 독립 신탁’\*\*으로 헌법에 정합화하거나
- (B) 제126조 예외 사유에 경제민주화·국민자산 분산을 명시해 충돌을 제거해야 한다.

---

#### 충돌 2. 재산권 보장(제23조) vs 강한 귀속 규칙(TEC·추출상한·의결권 분산)

-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 적합 및 공공필요 시 제한/보상을 규정한다. ([법제처](#))
- 문제는 “어디까지가 규제(사회적 제약)이고, 어디부터가 수용/수용유사(보상 필요)”냐는 경계다.

TEC가 “세법상의 납부 형태 변경”으로 설계되면 규제·조세로 처리되지만, 특정 기업·특정 지분을 강제 이전하는 그림으로 보이면 보상·비례성 논쟁이 급격히 커진다. (여기서 제37조 2항의 비례·본질침해 금지까지 결합됨) ([법제처](#))

해소 방향:

- 헌법 차원에서 “자본접근권/사회배당”을 공익 목적의 정당한 제한 사유로 명료화하고,
- 수용유사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은 보상·절차·사법심사(항소) 원칙을 동반 명시하는

방식이 안전하다.

---

### 충돌 3. 데이터 자원화 vs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(제17조)

- 공주민제는 데이터·플랫폼 수익을 시민 뒷으로 연결하려 하지만,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. ([법제처](#))
- “데이터를 자원화한다”는 표현이 잘못 설계되면, 국가/선택의 데이터 수집·결합·추론 자체가 위헌 리스크로 비화한다.

해소 방향:

-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/비식별화/목적 제한/감사 가능성 같은 안전장치를 원칙으로 박아야 한다(조문 신설 또는 제17조 보강).

---

### 충돌 4. 평등(제11조) vs ‘시민자산’ 제도의 배제/차등

- 평등 조항은 차별 금지와 특수계급 창설 금지를 둔다. ([법제처](#))
- 공주민제는 원칙적으로 “보편 배당”이라 평등과 잘 맞는다. 다만,
  - 지금 대상을 “국민”으로 한정할지(외국인·거주자 제외),
  - 미성년, 교정시설 수용자, 장기 해외체류자 등 경계 사례에서
  - 차등이 생기면 평등 심사가 불는다.

또한 시민지분이 상속·양도 가능해지면, 헌법이 금지하는 “특수계급의 고착” 논쟁이 뒤따를 수 있다(제11조 2항 취지).

해소 방향:

- 헌법 또는 헌법 위임입법에서 “보편성 + 비양도성(또는 제한양도) + 상속 제한” 같은 계급 고착 방지 원칙을 둬야 한다.

---

### 충돌 5. 근로의무(제32조 2항) vs 노동 이후 사회의 기본 설계

- 헌법은 근로의 권리뿐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규정한다. ([법제처](#))
- 공주민제가 “노동과 무관한 생존 기반”을 강조할수록, 근로의무 조항은 해석상 긴장 요소가 된다(특히 제도 반대파가 공격할 때).

해소 방향(선택지):

- 강한 개헌을 원하면 “근로의무”를 \*\*‘사회적 기여 의무’\*\*로 전환하거나
- 최소 개헌이면, “사회배당/자본집근권은 근로 여부와 무관한 권리”임을 별도 사회권 조항으로 명시해 충돌을 흡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.

---

## 4) 충돌을 해소하는 “개헌 패키지” 조문 초안

아래는 공주민제 구현에 필요한 최소 핵심을 (1) 신설 2개 + (2) 개정 5개로 둑은 것이다. 문장 톤은 헌법 문장체로 맞췄고, 세부 설계는 “법률로 정한다”로 위임했다.

## (신설) 제34조의2(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)

1. 모든 국민은 국민경제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디지털·플랫폼 수익에 대하여 기본적 접근권을 가진다.
2. 국가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자산계정 및 국민을 수익자로 하는 자산신탁 제도를 법률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3. 제2항의 권리는 보편성, 비차별성, 투명성, 세대 간 계급 고착 방지원칙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한다.

취지: 공주민제의 “권리(자본접근권)”를 사회권으로 못 박아, 제23·제119·제32와의 충돌을 흡수하는 중심축을 만든다. (현행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·사회보장과 논리적으로 연동됨) ([법제처](#))

---

## (개정) 제119조(경제질서) 보강

현행 제119조 2항(경제민주화) 뒤에 다음 문장을 추가하는 방식이 깔끔하다.

- “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자본 및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공정한 귀속, 경제력 집중에 따른 추출의 남용 방지, 국민의 자산 형성 및 분산 소유·참여에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” ([법제처](#))

취지: 공주민제의 추출 상한·플랫폼 규칙·분산소유를 ‘경제민주화’의 하위개념으로 헌법에 명시해, 비례성 심사에서 목적 정당성을 강화한다. ([법제처](#))

---

## (개정) 제126조(사영기업 국유화·경영통제 금지) 충돌 제거

제126조의 예외 사유를 확장하되, 남용을 막는 안전판을 같이 둬야 한다.

- “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또는 제119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.

다만, 법률은 국가가 아닌 독립적 국민자산신탁을 통하여 국민의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업의 일상적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.” ([법제처](#))

취지: 제119조로 가려던 공주민제 논리를, 제126조가 “문언으로” 막아서는 구조를 해소한다.

---

## (개정) 제59조(조세법률주의) + 제38조(납세의무) — TEC 합헌 기반

현행은 “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”라서, 납부방식의 혁신(지분 납부 등)을 헌법상 명료화하기에 부족하다. ([법제처](#))

- 제59조를 다음처럼 보강:  
“조세의 종목과 세율, 과세요건, 부과·징수 절차 및 납부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.”

- 제38조에 단서(또는 별문장) 추가:

“법률은 조세의 납부를 금전 외에 **지분, 수익권 등 재산적 급부**로 정할 수 있다.”

취지: TEC를 “현법상 불명확한 괴상한 조세”가 아니라, 조세법률주의 안의 ‘납부방식’으로 안전하게 집어넣는다.

---

### (개정) 제17조(사생활의 비밀과 자유) — 데이터 자원화의 방벽

제17조를 다음처럼 2항 신설로 보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.

- “국민은 개인정보에 관한 **자기결정권**을 가진다. 국가는 정보·데이터의 이용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**비식별화, 목적 제한, 접근 통제, 감사가 능성**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.”

취지: 공주민제의 데이터/플랫폼 수익 귀속이 “감시국가”로 오해받는 경로를 차단한다.

---

### (개정) 제120조(자원) 확장 — 디지털 자원의 헌법적 지위

현행은 천연자원 중심이다.

제120조에 3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간명하다.

- “국가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**정보·데이터·디지털 인프라 및 알고리즘 자원**을 보호하고, 공정한 이용과 국민에 대한 이익 귀속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.”

취지: 제120조의 “자원-특허-계획” 구조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, 공주민제의 ‘자원 사용료/라이선스’ 논리를 헌법상 정합화한다.

---

### (선택 개정) 제32조 2항(근로의 의무) 정리

강한 “노동 이후 헌법”을 원하면, 아래처럼 바꾸는 선택지가 있다.

- “모든 국민은 **능력에 따라 근로 또는 사회적 기여의 의무**를 진다.”

취지: 공주민제의 사회배당이 “근로의무 부정”으로 공격받는 통로를 줄이되, 공동체 기여라는 헌법적 윤리도 유지한다.

---

## 5) 정리: “가장 큰 헌법 장벽” 1개와 “핵심 해법”

### 1개

- 가장 큰 장벽은 **제126조**다. 공주민제의 지분 귀속·거버넌스 설계가 조금만 거칠면 “경영 통제/공유 이전”으로 읽힐 수 있다.
- 핵심 해법은 (i) **국민자산신탁의 독립성을 명시하고, (ii) 제119조 목적(경제민주화·귀속 공정성)\*\*과 제126조 예외를 조문으로 연결하는 것이다.**

